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및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보호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식비+간식비)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알기 쉽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비급여비용)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제4조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구 분		금액의 비율(%)	내 용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 100%	대상자 등급에 따라 비 급여를 뺀 100% ~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0 ~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0%),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개인부담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고시에 의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 시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대상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30

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간 내 본인부담금 미납 시에는 미납안내를 방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하여 알린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금된 금액은 연말(12월 1~2주차) 현금영수증 처리 및 의료비공제를 실시한다.

⑤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6조 (비 급여(개인부담금) 납입)

비 급여 항목으로 식사 및 간식비는 1일 5,000원으로 책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구 분	급 식 비	간 식 비	일일 총 금액	월간 총 금액
금 액(원)	4,500원 (아침(죽),점심식사)	500원	5,000원	130,000원 / 26일

① 비 급여항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이용료는 센터와 대상자 간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와 센터 게시판에 그 내역을 공지한다.

※ 단 방문요양 수급자는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비급여(개인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감염병 예방 조치 미이행 및 심한 공격성으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문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이용료의 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비 급여는 별도로 규정한다.

②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2)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기간이 만료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3) 자격(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유선으로 통보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5) 위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및 이행한다.

③ 월 이용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④ 월 이용료는 익월 30일까지 정해진 계좌에 입금한다. 변동비용에 관하여는 반영일 10일 전에 유선 또는 문자 등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예) 병원동행(진료비 + 처방약 조제비 등), 물품구매 등

⑥ 방문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인지활동지원

4) 정서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의 가정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 7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반드시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